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재보험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을 발표

뉴욕주 산재보험위원회,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청구 접수를 지원할 무료 웨비나 시리즈 및 웹페이지를 시작

팬데믹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접수 마감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일 뉴욕주가 근무 중 노출되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믿는 근로자들, 특히 오래 지속되는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온라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산재보험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신규 웨비나 시리즈는 근로자가 보상 청구를 접수할 때와 현금 및/또는 의료 혜택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다수의 힘들게 일하는 뉴욕 주민들이 건강, 안녕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코로나19 증상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바이러스의 지속되는 영향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이해해야 하며 산재보험 청구를 접수함으로써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신규 온라인 리소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실한 임금 혜택 양자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상 또는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부상 또는 질환을 갖게 된 날로부터 2년까지 산재 보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팬데믹 초기에 고용되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에게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청구에서 근로자의 보상 혜택이 직무 관련 부상 또는 질환의 치료를 위해 평생 의료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청구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근로자들조차 필요할 경우, 이들 의료혜택에 대하여 미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한편 모든 청구가 수락되지는 않는다는 점, 비록 청구가 거부될지라도, 청구를 접수하는데 아무 위험 또는 해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2022년 2월 23일: 정오 – 오후 1시](#)
- [2022년 3월 9일: 정오 – 오후 1시](#)

- 2022년 4월 13일: 정오 – 오후 1시

이들 웨비나는 무료이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참가자는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링크를 통해 세션에 참가할 수 있는데, 또한 위원회가 코로나19 웹페이지용으로 만든 wcb.ny.gov/covid-19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산재보험위원회 의장인 Clarissa M.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우리는 힘들게 일하는 뉴욕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과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회복중인 이들은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지금 그리고 향후 필요한, 상실한 임금 혜택과 의료 관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AFL-CIO 회장은 Mario Cilen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뉴욕 주민들은 이 전체 팬데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혜택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우리는 근무 중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믿는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하기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 일하시는 Hochul 주지사 및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세션에 일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는 근로자, 현재 의료 문제 및/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을 오래 겪는 사람”의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정보는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믿는 누구에게나 해당합니다.

근로자, 고용주 및 보험사를 위한 새로운 사실 및 기타 코로나19 리소스와 함께 이 웨비나의 정보는 위원회가 코로나19용으로 만든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용 청구를 접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보는 (877) 632-4996으로 뉴욕주 산재보험위원회에 전화를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저항 또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청구 접수를 못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면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AdvInjWkr@wcb.ny.gov.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